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정동홍
(농림수산부 축산국)

1. 머리말

우리는 그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공고, 수입감시제도 등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의 적절한 이용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여건이 달라져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요구가 증대되고 우리상품의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다.

수입개방이라는 경제물결이 현재 우리나라의 불가피한 여건이며, 국제경쟁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같은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 제3895(86. 12. 31)로 대외무역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상공부에 무역위원회가 설치되어 '87. 7. 1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실제로 앙고라 토끼털의 경우 과다한 수입으로 토모값이 하락되고 사육두수가 감소되는 등 양토사업에 큰 영향(피해)을 주어 한국양토협동조합에서 무역위원회에 산업영향 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며, 새우젓의 경우는 조사가 신청되어 잠정조치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와같은 사례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볼 때 새로운 산업피해 구제로서의 산업영향(피해) 조사제도와 앙고라 토끼털의 추진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산업피해 구제제도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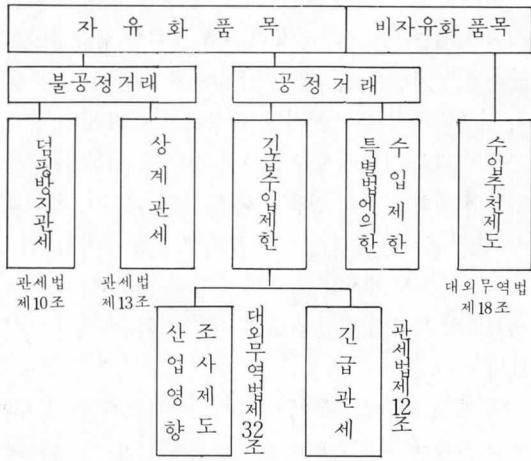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공정 또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하여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던가 또는 많은 양을 수입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균형있는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거나, 발생할 때 정부가 이에 관하여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내산업이 수입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하여 국내 유망산업이나 기반이 약한 산업이 자리도 잡기전에 저해받는 경우나, 구조적으로 불황산업이 구조 조정의 기회를 잃는 경우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국내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단순한 수입량의 급증이나 과

다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즉, 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구제와 외국기업의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므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관리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산업영향(피해) 조사

공정무역에 대한 새로운 산업피해 구제제도로서 대외 무역법에 의한 산업영향 조사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덤핑(생산비 이하로 싸게 수출하는 행위)이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생산, 고용, 판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가. 무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무역위원회는 근래 우리의 경제시책이 수입개방화에 따라 수입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에 따라 대외무역법(86. 12. 31 공포)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공부에 설치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수입으로 인한 관련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동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한편, 불공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조사와 동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무역법의 정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관계로 부터 국제무역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무역위원회 산하에는 무역조사관실이 설치되어 있어 산업영향 조사에 따른 실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신청

대외무역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 또는 과다한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의 발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산업에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은 상공부장관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산업영향 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상공부 고시 제87-22호로 마련되어 있다.

법에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라 함은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 이상인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당해품목 생산자와 국내산업의 생산자로 조직된 협회 조합 등으로 되어 있는 바 농축산물 중 양고리 토끼털에 대하여 한국양토조합이 제일

처음으로 조사 신청된 바 있으며 그 다음이 새우젓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사례가 있다.

(2) 조사개시 결정

상공부장관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 부의하고 부의한지 30일 이내 심의·의결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고, 조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불필요한 조사 신청의 방지와 행정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3) 피해의 조사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법 제33조 및 조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일정, 공청회 개최시기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무역조사관과 그 소속 공무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규정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무역·경영·법률 및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입증가 요인 및 정도, 당해 국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필요한 조치의 방법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게 된다.

무역조사관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신청된 물품의 이해 관계인의 요청이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도모토록 하고 있으며, 조사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종결하며 기한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18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규정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신청자격이 미비하거나 국내 산업발전 저해와 현저하게 경미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당해품목의 주요 수출자 등이 수출을 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수락된 경우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피해의 판정

법 제40조 제1호, 제4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관련하여 산업피해 조사가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내산업이 수입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조사규정 제4조는 국내산업 발전저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장 폐쇄를 포함한 생산시설의 불완전한 가동으로 상당한 시설이 유휴, 가동불능, 또는 산업내부의 상당한 실업, 불완전한 고용 또는 신규 산업의 경우 생산개시가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며, 산업발전 저해 우려라 함은 판매의 감소, 재고수준의 증가, 관련 국내산업의 생산, 이윤임금, 고용의 하락 또는 기대수익율의 점진적 하락 추세 등을 말하고, 기타 경제적요인 및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영 제75조에서는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구제조치

법 제34조내지 제36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3항 및 영 제70조내지 제73조와 관련하여 상공부장관은 산업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제한(5년이내의 기간에서)

②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 조사대상 업종에 대한 공업 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④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조치

또한, 상공부장관은 조사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가 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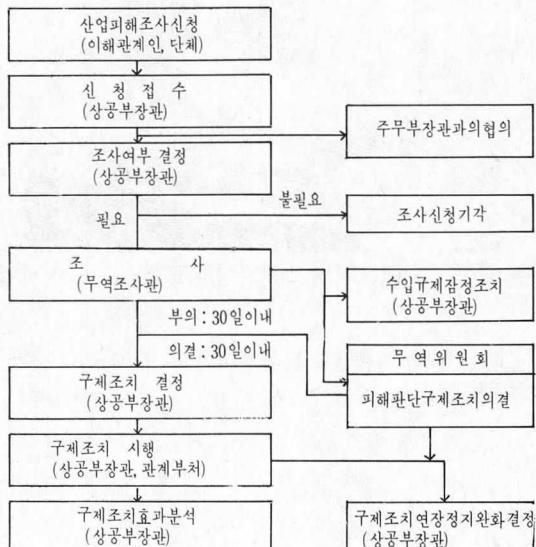
심의·의결을 거쳐 잠정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에 새우젓의 경우에 이 조치를 취하여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6) 재조사 신청

신청인이 상공부장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할 수 있으나, 당초 조사에 의한 조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결과분석 및 조치의 해제

상공부장관은 조치한 날로부터 1년마다 그 조치의 결과를 분석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를 해제한다.



4. 축산물의 산업영향(피해)조사 사례

축산물 중 양고라 토키털이 처음으로 산업 영향 조

사가 신청되었는데, 토키털은 오래전부터 수입자유화된 품목으로서 방모사나 직물류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8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산토모를 이용한 수출의 호조를 보여 가격도 좋았으나, '86년 하반기부터 중공, 칠레 등으로부터 값싼 토모의 수입이 증가되어 '87년에는 전년대비 138%가 늘어나 국내산도 가격이 50% 정도로 떨어져 판매도 되지 아니하고 적체됨에 따라 국내 양토농가의 도산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양토협동조합(조합장 박주식)에서는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양고라 토키털의 경우에는 '87년 이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가격 하락으로 양토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수출원자재라는 점과 국내산의 공급비율이 10~15%로 낮고 수요자측에서 국산품의 가격이 높고 품질(등급)이 외국산만 못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가 엇갈려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구제조치가 주목된다.

5. 맷는말

수출호조에 따라 계속되는 무역흑자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셀 것이며, 이제까지 수입제한으로 일관해 온 농축산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농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유치산업으로서 구조적 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여건하에서 하루속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